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040

발의연월일: 2025. 2. 11.

발 의 자:윤준병·문정복·이병진

서삼석 • 박희승 • 강준현

조계원ㆍ허 영ㆍ박민규

신영대 · 박홍배 · 이원택

김태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나 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국무총리·국무 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와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국무위원 등이 고의적으로 불출석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국정현안이나 의안심사를 진행할때 실체적 진실 발견과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

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며,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제3항 및 제6항).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3항 중 "답변을"을 "성실하게 답변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명백히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
구) ① · ② (생 략)	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	③
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	
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	
여 <u>답변을</u> 하여야 한다.	<u>성</u> 실하게 답변을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
	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
	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
	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명백히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u>한다.</u>